

보험약관 쉽게 이해하기

1. 보험약관이란

-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중요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성을 먼저 이해하시고 중요한 사항을 반드시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2. 본 약관집의 구성

- **가이드편**
 - √ 가입자 유의사항
 - √ 주요내용요약서
 - √ 주요보험용어해설
 - √ 고객권리안내문

- **보험약관**
 - √ 주계약 약관
 - √ 특약 약관

- 보험약관은 주계약 약관과 특약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계약 약관에는 모든 보험계약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특약약관에도 준용되고 있으므로, 꼼꼼히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고객님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용어해설란을 마련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생명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상품공시실에 상품요약서와 보험약관이 공시되어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상품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약관을 분실하셨을 경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삼성생명 홈페이지 고객상담 코너에서 계약변경,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등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콜센터(1588-3114), 홈페이지 사이버 창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다음과 같은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 **사이버창구** 계약조회, 기본계약사항, 보장내용조회, 보험계약대출, 자동이체 조회/변경, 계약변경, 계약금액 감액, 변액보험펀드변경, 보험료납입등

- ☎ **콜센터** 자동이체신청, 변경, 해지, 보험료 납입신청, 청약철회 접수, 품질보증접수, 보험계약대출신청, 각종 상담문의등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적용이율이 변동하는 보험(금리연동형보험)상품은 적립액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이 공시이율로 적립됩니다.
-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보험료의 100%(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 금액을 한도로 함)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개시 이후 지급받으시는 연금에 대해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연금개시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정상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비율만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특히, 가입일로부터 5년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지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출조건으로 보험판매를 할 수 없고, 타 보험회사의 유사상품 3종 이상을 필수적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은행의 지정된 보험판매자만이 보험판매가 가능하고, 전화 등 고객과 비대면 방식의 보험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2. 해지환급금에 관한 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및 사업비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❶ 보험금 지급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주계약 관련 유의할 사항

- 주계약은 연금지급개시전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시, 연금지급개시후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사망 또는 연금지급 종료시에 소멸합니다.
-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후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시에도 월계약해당일에 월대체보험료(기본보험료에 대한 예정유지비)가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 제외)에서 차감됩니다.
- 종신연금형은 연금지급개시후 해지가 불가합니다.
- 연금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으로 계산되어 연금소득세율로 원천징수하며, 국민연금 등을 더하여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종합과세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계약취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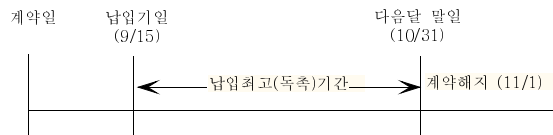
계약 청약시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단채(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 일시납상품은 제외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유니버설상품에서 월대제보험료를 충당 할 수 없게 된 경우 포함)에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하며, 이는 약관에 정한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시)



(제2회 이후 보험료의 연체시 및 유니버설상품에서 의무납입기간내 연체 또는 월대제보험료 충당 불가시)

7.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일시납상품은 제외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삼성생명 상담 채널 안내

삼성생명은 항상 고객님의 가까이에서 친절하고 빠른 상담을 하고 있으니, 보험상품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삼성생명 콜센터 1588-3114**

삼성생명 콜센터로 전화주시면 한번에 모든 업무를 해결할 수 있는 One-Call-Service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ARS를 이용한 조회업무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삼성생명 사이버 창구 www.samsunglife.com**

삼성생명 사이버창구에 접속하시면 고객님의 계약사항, 보장내역 조회, 보험계약대출 및 상환업무 등 모든 보험업무를 인터넷을 통해 편리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창구를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가까운 삼성생명 고객플라자에 신분증, 본인명의 은행통장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여 사이버창구 등록신청(최초 1회)을 하셔야 합니다.

*** E-mail 서비스**

고객님의 E-mail을 등록하시면 자동이체 입금결과, 보험계약대출내역 등을 알려드릴뿐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건강정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mail 서비스는 삼성생명 콜센터, 담당 보험설계사, 고객플라자, 사이버창구 등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분쟁조정이 필요하거나 보험금 지급처리내용 등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등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및 지원 안내 >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이동전화 : 지역번호 - 1332)

부산지원 : 051-606-1700-1

대구지원 : 053-760-4000

광주지원 : 062-606-1616

대전지원 : 042-479-5120-2

주요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 및 이용에 관한 고객권리안내문

이 권리안내문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조회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하신 고객님의 동의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이와 관련된 고객님의 권리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 삼성생명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님의 동의하신 목적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활용할 것이며, 동의하신 범위 이상으로 불법·부당하게 제공·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제공·조회에 동의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삼성생명이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이며, 제공받는 자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정보보유이용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공받는 자

- 삼성생명으로부터 보험계약의 체결·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계약적부·보험사고 조사회사, 본건 계약체결 대리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전산시스템개발회사, 콜센터운영회사, 우편물 배달회사, 리서치회사, 서비스제공회사 등]
- 타보험회사(우체국, 유사보험사업사 포함), 재보험회사,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집중기관(생명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

- 이용목적

： 계약적부·보험사고 조사·보험금 지급심사,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상담, 조사연구(리서치), 서비스 제공,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보험원가 관리, 보험모집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에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의 정책자료로 활용

- 제공·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이 계약 및 이 계약 전후에 삼성생명과 본인과의 거래관계 등을 통해 삼성생명이 취득한 다음의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e-Mail,직업,직

- 장, 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 등]
- 보험거래정보 [퇴직연금(보험), 단체보험 포함]
- 보험금 지급정보
-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 **정보보유·이용기간** : 당해 계약의 효력 종료시까지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라 삼성생명이 신용정보집중기관(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은행연합회 등)으로부터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대한 동의이며, 조회할 신용정보의 내용, 조회 목적, 동의 효력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회목적** : 보험계약 가능 여부의 확인 및 유지·관리, 보험사고조사
 - **제공받는 정보** : 타사 보험가입 및 보험금 지급 정보
 - **동의 유효기간** : 당해 계약의 효력 종료시까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과 관련하여 고객님의께서는 다음의 권리를 가집니다.

1.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

- 보험계약 체결 3개월 이후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의 유지·관리·상담, 기타 업무위탁에 따른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철회의 대상 및 내용 등을 특정하여 삼성생명 대표전화(1588-3114)로 전화하시거나, 삼성생명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또는 서면으로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 삼성생명은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2. 영업목적 연락 중지 요청

- 고객님의 새로운 금융상품의 소개 등 영업목적 또는 서비스 제공목적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연락 중지 청구는 무료 ARS전화(080-331-3114) 또는 삼성생명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 사이버창구에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으며(사이버창구 이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삼성생명은 1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합니다.

3. 제공 사실 통보 요구

- 삼성생명이 고객님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삼성생명 고객센터 방문, 삼성생명 대표전화(1588-3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최근 1년간의 정보 제공에 대하여 제공받는 자, 그 이용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본인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알리도록 요구하거나 삼성생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당해 통보 요구가 있는 경우 삼성생명은 7일 이내에 통보 또는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4. 조회·열람 및 정정 청구

- 삼성생명 고객센터, 대표전화(1588-3114),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정보를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삼성생명은 서면, 전자문서, 인터넷 홈페이지 사이버창구를 통하여 제공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드립니다.
 - 제공 또는 열람한 고객님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삼성생명은 정정청구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적의 조치한 후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알려드립니다. 삼성생명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정보의 제공·조회·이용 및 위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생명 신용정보관리·보호부서 : 02-751-8611 (서울 중구 태평로2가 150번지 삼성생명빌딩)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 ※ 고객권리안내문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삼성생명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등으로 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보험약관 목차

1. 연금저축 삼성에이스골드연금보험(B1.2)...1

연금저축
삼성에이스골드연금보험(B1.2)
약관 관

목 차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4

-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제 2조 【청약의 철회】
- 제 3조 【용어의 정의】
- 제 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제 5조 【계약의 무효】
- 제 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 7조 【계약의 임의해지】
- 제 8조 【계약의 세제 혜택 등】
- 제 9조 【계약의 소멸】
- 제10조 【특별계정의 운용】
- 제11조 【보험나이】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11

- 제1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 제1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제1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14

-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제20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제21조 【해지환급금】
- 제22조 【배당금의 지급】
- 제23조 【소멸시효】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17

- 제24조 【계약전 알릴 의무】
- 제25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제2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제27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19

- 제28조 【주소변경 통지】
- 제29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 제30조 【대표자의 지정】
- 제3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 제3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제33조 【보험금 등의 지급】
- 제34조 【계약내용의 교환】
- 제35조 【보험계약대출】

제6관 분쟁조정 등.....23

- 제36조 【분쟁의 조정】
- 제37조 【관할법원】
- 제38조 【약관의 해석】
- 제3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제4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제42조 【준거법】
-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25
(별표2) 재해분류표.....	27
(별표3)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계산.....	28

연금저축 삼성에이스골드연금보험(B1.2) 약관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지며, 보험기간은 다음에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가입시부터 연금지급개시일의 전일까지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

단,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일부터 최종연금 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

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화·우편·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보험계약(이하 “통신판매 계약”이라 합니다)의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월납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 체결시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누계액이 기본보험료 총액(「월납 기본보험료×12×보험료납입기간」으로 산출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기본보험료 총액"이라 합니다) 이하인 경우의 납입보험료는 기본보험료로 봅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납입하기로 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금지급개시나이-2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③ 보험료 납입한도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합하여 연금지급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총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300%이내로 하며, 연간납입한도는 매년 「월납 기본보험료×12×300%」로 합니다. 단, 월납 기본보험료의 최고한도는 100만원으로 하고,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은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④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개월마다 돌아오는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단,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⑤ 월대체보험료

1.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내 :
해당월의 예정사업비(수급비 제외)를 말하며, 해당월 기본보험료 납입시에 적립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월계약해당일 이전에 납입시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공제합니다.
2.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 :
기본보험료에 대한 해당월의 유지비(보험료납입기간 중에는 납입중 유지비, 보험료납입기간 이후에는 납입후 유지비)를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에서 공제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본보험료의 수급비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예정사업비는 보험료 납입시에 납입보험료에서 공제합니다.

⑥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⑦ 적립액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통신판매 계약은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광기록매체 및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당해 문서를 드린 것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청약시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5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및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의 설명 >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3.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4.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연금지급형태(종신연금형)를 연금지급개시신청시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개시나이를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생존연금이 지급개시 된 이후에는 제외) 중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계약의 해지환급금, 미경과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회사가 직접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⑤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1.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2.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3. 계약을 나누어(금액분할) 이전하는 경우
4.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나.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5.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가. 종신연금형으로서 연금이 지급 중인 계약
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특약 포함)
다.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특약 포함)

⑥ 계약자가 이미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의하여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①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지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사망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2. 계약자의 퇴직
 3. 계약자의 해외이주
 4.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5.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6. 연금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③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으로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이 계약에만 적용이 되며, 부가되는 특약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합니다.
- ⑤ 본 조를 포함하여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失蹤宣告)를 받은 경우도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제2항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별표2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 개시전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10조 【특별계정의 운용】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을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 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적립액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제11조 【보험나이】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가입시 18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연금개시나이가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또는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보험나이 계산 예시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생년월일이 1988년 10월 2일이고, 계약일 현재 일자가 2009년 4월 13일인 경우의 보험나이는 다음의 계산방법에 따라 21세가 됩니다.

$$\begin{aligned} & \cdot 2009\text{년 } 4\text{월 } 13\text{일} - 1988\text{년 } 10\text{월 } 2\text{일} \\ & = 20\text{년 } 6\text{개월 } 11\text{일} = 21\text{세} \end{aligned}$$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2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자동이체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이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보장개시일”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다만, 재해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의 성립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보험기간 중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까지는 기본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계약 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후부터는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해당월의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 보험료의 납입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내에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하며,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후에는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월계약해당일의 다음날부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이후 최초로 다가오는 영업일로 만료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단,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7년(84회 납입)이 지난 경우에는 연체된 월대체보험료 이상의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설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① 보험료 납입기간이내에 한하여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내지 제4항, 제12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7조(사기에 의한 계약)를 준용합니다. 단,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1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제16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채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의해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7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연금지급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연금지급형

태에 따라 매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생존연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연금지급개시 신청시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중에서 연금지급형태를 최종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요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보험대상자)를 해친 경우

제20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보험의 적립액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분기 1일(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며, 매분기 1일부터 당해분기 말일까지 3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

출률을 차감한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공시이율의 공시 >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의 “상품공시실” 내 “전체 보험공시”에서 각 상품별로 공시하며, 적용되는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은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적용이율공시”에서 공시합니다.

제21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하며,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은 제20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최저보증이율 >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증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5%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5%)로 적립됩니다.

제22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매년 이차배당기준율로 적립하여 계약소멸시 지급하거나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금액에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배당금 발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

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3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24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 의무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보험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보험계약 청약을 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5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5.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하였을 경우.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1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⑤ 제24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사유
2.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8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초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생존연금에 대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30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31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2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적립액 또는 해지환급금 등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생존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 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33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적립액 또는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및 적립액의 경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영업일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생존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
- ③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제25조(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가 제1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제3의 의사를 정하고 그 제3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3의 의사”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

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⑤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2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3항에 의한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4항에 따라 제3의 의사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경우

⑥ 제5항에 의하여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제2항,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단,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은 제외)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적립액,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합니다.

④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7조(계약의 임의해지)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해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하지는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분쟁조정 등

제36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제3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률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1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하지 아니한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21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2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4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생존연금 : 약관 제17조)
-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은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 종신연금형 >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는 한 지급 (10회 또는 20회 보증지급)

- (주) 1.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은 매분기 1일(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분기 1일부터 당해분기 말일까지 3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공시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합니다.
5.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10회(또는 20회) 보증지급기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10회(또는 2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6. 보증지급기간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제6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자가 보험가입시점에 정해진 종신연금형을 확정연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 확정연금형 >

지급사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또는 20년)의 매년 계약해당일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시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 나누어 계산한 연금액을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지급

- (주) 1.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는 금액으로 합니다.
2. 생존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3.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공시이율」은 매분기 1일(매년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에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매분기 1일부터 당해분기 말일까지 3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공시이율은 가입후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연복리 1.5%를 최저보증합니다.
5.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20년) 동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회수(5회, 10회, 2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6. 연금지급기간안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7.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생존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시에는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별표2)

재 해 분 류 표

1. 보장 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의사 및 의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주)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 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3)

보험금 등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제33조 제2항 관련)

구 분		적 립 기 간	적립이율
생존연금 (제17조)	회사가 생존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생존연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구 분	적 립 기 간	적 립 이 율
해지환급금 (제21조 제1항)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지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3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소멸(제9조) 제2항에 의해 사망당시 적립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